

#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송명화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2156호
- 다. 발의일자: 2021. 2. 4.
- 라. 회부일자: 2021. 2. 9.

### 2. 제 안 사 유

-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20년 7월, ‘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’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이 전략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‘탄소중립’이라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제4항).
- 나.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‘2050년 탄소중립’으로 설정함(안 제3조제2항).

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‘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’의 최종 목표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올해 1월, ‘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’의 세부 계획인 ‘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’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, 이 계획의 최종 목표를 2050년까지 탄소중립, 즉, 온실가스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음.



〈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의 최종 목표〉

-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의 대전제이자 최종목표인 '2050년 탄소중립'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